

HS 효성첨단소재(주)

전략물자 수출제한 정책



준법지원팀

2025년 04월 30일

목차

01. 목적.....	2
02. 적용범위	2
03. 용어의 정의	2
04. 실행 방안	3

01. 목적

본 정책은 HS 효성첨단소재(주)(이하 ‘회사’)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 규범을 준수하고, 전략물자 자율 수출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회사는 엄격한 전략물자 관리가 대외 신인도 제고 및 지속가능경영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이를 적극 실천한다.

02. 적용범위

- 01) 본 정책은 회사의 본사, 국내/외 생산 및 판매법인과 지점, 자회사 등 회사의 재무적 연결범위에 속한 모든 사업체 소속 임직원에게 적용한다.
- 02) 임직원은 본 정책을 준수하여야 하며, 협력사, 대리점, 아웃소싱 파트너 등을 대할 때에도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- 03) 본 정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행위가 소재지(또는 행위지) 국가의 법과 모순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을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한다.

03. 용어의 정의

- 01) ‘수출’이란 서비스나 물품 등의 재화나 기술의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, 대한민국 국민(법인 포함)으로부터 외국인(외국법인 포함)에게로의 이전을 말한다.
- 02) ‘전략물자’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전략물자로 지정·고시 된 물품 등을 말한다.
- 03) ‘대량파괴무기등’이란 전략물자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무기의 제조, 개발,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등을 말한다.
- 04) ‘전략물자등’이란 전략물자 또는 대량파괴무기등과 같이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허가, 상화허가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말한다.
- 05) ‘대외무역법’이란 대외 무역을 진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국제 수지의 균형과 통상의 확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 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 및 관련 규정을 말한다.

04. 실행 방안

- 01) 전략물자등의 수출 관리제도의 올바른 이행이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, 이를 지속하도록 노력한다.
- 02) 전략물자를 자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필요 조직과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며, 회사의 모든 조직은 자율수출관리기구의 효율적·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한다.
- 03) 정부의 수출통제체제 및 전략물자등 수출 관리 정책에 적극 협력하며, 전략물자 등의 불법 수출 등 대외 무역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.